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0호서식]

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구분	변경 전 자산운용전문인력(13명)		변경 후 자산운용전문인력(12명)		변경사유
	임원	직원	임원	직원	
성명	이동준	채온 김태윤 장세림 정상원 전태원 김진기 조인호 강병민 정순현 남효민 김재윤 최연진	이동준	채온 김태윤 장세림 정상원 전태원 ~~김진가~~ 조인호 강병민 정순현 남효민 김재윤 최연진	*상실* 김진기 (퇴사)

변경내역	□ 등록	■ 상실

변경내역	구분	직위	성명	생년월일	변경일	등록 : 주요경력(3년이내) 상실 : 상실 전 담당업무
	상실	과장	김진기	1992.12.09.	2026.09.01	리츠운용 및 관리

우리 회사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어 「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
2026 년 9월 2일

신청인 마스턴투자운용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
(등록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2조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 해당 여부 및 상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(상실)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